|  |
| --- |
| **해외 진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(CSR) 통합 심사기준 수립** |

**KOTRA CSR 정량지표 (영역별 가중치)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TBL** | **평가항목** | **지표명** | **배점** |
| **제조업** | **비제조업** |
| **모기업** | **현지법인** | **모기업** | **현지법인** |
| 1. 경제경영 | 1-1 사회책임경영체계 | 지표1: CEO의 사회책임경영 의지 | 1 | 3 | 1 | 3 |
| 지표2: 부패 | - | 2 | - | 2 |
| 1-2 기업의 경제적 안정성 | 지표3: 사업영위기간 | - | 1 | - | 1 |
| 지표4: 경영실적 | - | 3 | - | 3 |
| 경제 총계 | 10 | 10 |
| 2. 사회 | 2-1 인권 | 지표5: 노동관행 | 20 | 15 |
| 지표6: 근로조건 | 10 | 7.5 |
| 지표7: 결사 및 단체교섭 | 10 | 7.5 |
| 합계 | 40 | 30 |
| 2-2 안전‧보건‧복지 | 지표8: 안전 | 5 | 5 |
| 지표9: 인력개발 | 5 | 8 |
| 합계 | 10 | 13 |
| 2-3 협력업체 | 지표10: 공정거래 | 2.5 | 2 |
| 합계 | 2.5 | 2 |
| 2-4 고객 | 지표11: 고객보호 | 2.5 | 10 |
| 합계 | 2.5 | 10 |
| 2-5 지역사회 | 지표12: 지역사회 니즈파악 | 5 | 10 |
| 지표13: 지역사회 공헌활동 | 10 | 15 |
| 합계 | 15 | 25 |
| 사회 총계 | 70 | 80 |
| 3. 환경 | 3-1 환경정책 | 지표14: 환경정책제정/공시여부 | 5 | 5 |
| 3-2 환경법 준수 | 지표15: 환경법령 위반여부 | 2 | 5 |
| 환경 총계 | 20 | 10 |
| 총계 | 100 | 100 |

|  |
| --- |
| **2014 해외진출 한국기업 사회책임경영(CSR)시상 심사 신청서** |

|  |
| --- |
|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‘기업의 사회적 책임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; CSR, 이하 CSR)' 활동은 세계시장에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우리기업의 CSR 활동 현황을 조사하고 CSR 우수기업을 선정 · 포상하여 모범사례를 전파시키고자 합니다.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, 귀사의 CSR 방향도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. (아울러 설문항목에 대한 문의 및 의견도 받습니다.)**[설문조사 작성 방법]**① 해당사항의 요구대로 기재하시되, 내용이 많은 경우 양식에 구애 받지 마시고 충분한 내용을  기재하여 주십시오.② 구체적인 데이터나 내용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와 세부 내용을 서술해 주십시오.③ 특별한 사유 없이 응답을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④ 정보 객관성과 정확성 확인을 위해 사후 문의연락 및 실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.⑤ 증빙 자료를 요구한 항목에 대해서는 설문지와 함께 파일로 첨부해 주십시오. |

※ 응답하신 설문은 '2014 KOTRA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책임경영(CSR) 조사'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

 알려드립니다.

※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기업이 아닌 현지법인의 현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설문설계 : 산업정책연구원**담당: 고혜준 연구원E-mail: hjko@ips.or.kr 전화: +82-2-360-0754 | **CSR시상 주관 : KOTRA 한국**담당 : 김진희 대리E-mail : jinhee\_kim@kotra.or.kr전화 : +82-2-3460-7356 | **CSR시상 주관 : KOTRA 인도네시아**담당 : 염승만 차장E-mail : ysm@kotra.or.kr전화 : 021-574-1522 |

|  |
| --- |
| **신청기업 정보** |
| ※ 귀사 및 담당자의 일반 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  |
| **기업 일반사항**  |
| 산업분류 | □ 제조업군전자부품/컴퓨터/통신장비, 섬유 및 의류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, 기계/자동차/트레일러 및 부품, 금속 및 금속가공, 식음료, 출판/영상/방송통신, 정보서비스업/기타 제조업 |
| □ 비제조업군도소매업, 무역업, 금융 및 보험, 건설업/부동산 및 임대업, 관광운수, 사업서비스, 숙박 및 요식, 기타 서비스, 농업 임업 어업 관업 전기/가스/수도사업 등  |
| 기업명 |  |
| 주요제품/브랜드 |  |
| 기업주소(본사) |  |
| 주요 사업장 위치국가 |  |
| 구분 | □ 모기업 □ 현지투자법인  |
| 사업 개시 연도 |  |
|  |
| **담당자 일반사항** |
| 성명 |  |
| 소속 부서 |  |
| 직책 |  |
| 연락처 |  |
| 메일 |  |
|  |

|  |
| --- |
| **2014 KOTRA 해외진출기업 사회책임경영(CSR) 평가지 (정량평가)**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영역.1** |  | 경제‧경영성과 |

|  |
| --- |
| 본 영역은 귀사의 **경제성과에 관한** 질문입니다. 귀사의 현황과 가장 가까운 문항을 선택하여주시거나 귀사의 상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 모든 문항은 설문지 작성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(2013년 10월 1일~2014년 9월 30일) 의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.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1-1** |  | 사회책임경영체계 |

**지표 1: CEO(또는 대표)의 사회책임경영 의지**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1 | CEO는 공식적인 사내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책임경영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였습니까? |
|  | 구분 | 내용 |
|  | 모기업 | 연간 회 |
|  | 현지법인 | 연간 회 |

|  |
| --- |
| * 최근 1년간: 2013년 10월 1일 ~ 2014년 9월 30일
* CEO: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를 지칭
* 사회책임경영: 기업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,간접적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제반 이슈들에 대한

 법적, 경제적, 윤리적 책임을 감당할 뿐 아니라,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포착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련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활동* 사내외 커뮤니케이션: (신년사, 정기적 CEO메시지, 사보, 포럼강연, 공식적인 전사 이메일, 지속경영보고서, 공식 웹사이트,

 언론매체 등)을 통한 사내외 지속가능경영 의지에 대한 강조  |

**지표 2: 부패**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2 | 귀사는 최근 1년 동안 뇌물 수수 및 탈세혐의로 적발 및 처벌된 적이 있습니까?  |
|  | 구분 | 표시 | 내용 |
|  | ① | □ | 있음 |
| 사후조치사항: |
|  | ② | □ | 없음 |

|  |
| --- |
| * 최근 1년간: 2013년 10월 1일 ~ 2014년 9월 30일 / 적발대상: 기업 및 임직원 모두 포함
*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내용

EX) 확인된 부패 사례의 수와 성격, 확인된 부패 사례 중 부패를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례의 수, 확인된 부패 사례 중 부패 관련 위반을 이유로 사업파트너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례의 수, 보고기간 동안 부패와 관련하여 조직이나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법적 분쟁과 그에 대한 결론 보고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1-2** |  | 기업의 경제적 안정성 |

|  |
| --- |
| **지표 3: 사업영위기간** |
| 지표 3 | 귀사의 현지 사업영위기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 |
|  | 내용 |
|  | 현지 사업 영위 기간: ( )년 |
|  |

**지표 4: 경영실적**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4 | 귀사의 최근 3년간 진출국에서의 경영실적을 다음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십시오. |
|  | 구분 | 내용 |
|  | 연도 | 2011년 | 2012년 | 2013년 |
| **자기자본총액(a)**  |  |  |  |
| 자산총액(b) |  |  |  |
|  |
| 자기자본비율(a/b\*100)% |  |  |  |
| **매출액(a)**  |  |  |  |
| 총자본(자산총액)(b) |  |  |  |
| 총자본회전율(a/b\*100)% |  |  |  |
| **당기순이익(a)**  |  |  |  |
| 총자본(자산총액)(b) |  |  |  |
| 총자본수익율(a/b\*100)% |  |  | 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영역.2** |  | 사회성과 |

|  |
| --- |
| 본 영역은 귀사의 **사회성과**에 관한 질문입니다. 귀사의 현황과 가장 가까운 문항을 선택하여 주시거나 귀사의 상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 모든 문항은 설문지 작성일 기준 최근 1년(2013년 10월 1일 ~ 2014년 9월 30일)의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.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2-1** |  | 인권 |

**지표 5: 노동관행**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5 | 귀사는 최근 1년 동안 노동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된 적이 있습니까?  |
|  | 구분 | 표시 | 내용 |
|  | ① | □ | 있음 |
| 사후조치사항: |
|  | ② | □ | 없음 |

|  |
| --- |
| \* 차별금지,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, 아동노동, 강제노동, 근로계약서 미작성·최저임금 미준수 등 |

**지표 6: 근로조건**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6 | 아래 인권 관련 이슈에 관한 성과관리 지표를 양식에 따라 기입하시오.  |
|  | 구분 |  | 관련이슈 | 성과 관리 지표 |
|  | ① | □ | 근로시간 (국제노동기구협약 No.130) | •평균 근로시간: ( ) 시간 |
| 연장근로 최대시간 설정 여부 | •연장근로 최대시간 설정 여부 | □ 예 | □ 아니오 |
|  | ③ | □ | 관련 성과관리 데이터 없음 |

|  |
| --- |
| \* 근로조건: 보상, 근로시간, 휴게시간, 휴일, 징계 및 해고 관행, 모성보호, 근무지 환경, 산업안전보건, 주거가 제공되는 경우 주거 환경, 그리고 안전한 물, 구내식당, 의료서비스지원과 같은 복지 등이 포함되며 본 설문지는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을 기입- 근로조건이 국제노동기준 노동법에 합치되는가? |

**지표 7: 결사 및 단체교섭**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7 | 아래 인권 관련 이슈에 관한 성과관리 지표를 양식에 따라 기입하시오.  |
|  | 구분 |  | 관련이슈 | 성과 관리 지표 |
|  | ① | □ | 집회의 자유(국제노동기구협약 No.87, 98) | • 노동조합 결성여부• 단체교섭 보장여부• 단체행동 보장여부 | □ 예 | □ 아니오 |
| ③ | □ | 관련 성과관리 데이터 없음 |
|  |

|  |
| --- |
| \* 이 지표를 통해 조직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여건을 평가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음. 또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이 사업장 전반에서 취한 조치를 평가함.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2-2** |  | 안전‧보건‧복지 |

**지표 8: 안전**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8 | 귀사는 최근 1년 동안 전사 혹은 일부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? |
|  | 구분 | 표시 | 내용 |
|  | ① | □ | 미실시 |
|  | ② | □ | 일부 직원만 대상 |
|  | ③ | □ | 전 직원 실시 |

|  |
| --- |
| * 최근 1년간 : 2013년 10월 1일 ~ 2014년 9월 30일
* 산업안전교육 관련 주제: 안전일반, 산업안전, 화재예방, 사고방지, 위험물 취급, 컴퓨터 활용 관련, 성희롱 등
* 교육시간: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모두 포함
 |

**지표 9: 인력개발**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9 | 귀사에서 최근 1년간 지출된 직원 1인당 교육비용 및 시간은 얼마입니까? |
|  | 구분 | 표시 | 내용 |
|  |
| ① | □ | 종업원 1인당: 원 종업원 1인당: 시간 |
| ② | □ | 관련 성과관리 데이터 없음 |
|  |

|  |
| --- |
| \* 인력개발: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에 대하여 보고* 최근 1년간 : 2013년 10월 1일 ~ 2014년 9월 30일
* 종업원: 정규직, 회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 (단, 파견, 사내도급, 소사장제 등은 제외)
* 교육시간: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모두 포함
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2-3** |  | 협력업체 |

**지표 10: 공정거래**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10 | 귀사는 2014년 현재(작성일 기준)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로비, 금품, 향응 등 거래부정행위에 대한 사내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?  |
|  | 구분 | 표시 | 내용 |
|  | ① | □ | 예 |
|  | ② | □ | 아니오 |
|  | ③ | □ | 해당 없음 |

|  |
| --- |
| * 경쟁저해행위,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자발적 조치 기준 보고
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2-4** |  | 고객 |

**지표 11: 고객보호**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11 | 귀사는 2014년 현재(작성일 기준)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? |
|  | 구분 | 표시 | 내용 |
| ① | □ | 예 |
| 제도명 기재: |
| ② | □ | 아니오 |

|  |
| --- |
| \*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제품 내 유해물질 분석제도, 제품 안전성을 위한 물질, 자재안전성 검증 제도, 고객의 안전을 위한 제품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교육 제공 등 - 제품 또는 서비스 생명주기 동안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노력의 존재여부와 그 범위를 평가함.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2-5** |  | 지역사회 |

지표 12: 지역사회 니즈파악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12 | 귀사는 2014년 현재(작성일 기준), 지역사회의 니즈파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?  |
|         | 구분 | 표시 | 내용 |
| ① | □ | 예, 니즈파악을 제도화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,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공헌활동을 하였음 |
| 니즈파악방식: 활동내용:  |
| ② | □ | 예, 니즈파악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,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공헌활동을 하였음 |
| ③ | □ | 니즈파악방식: |
| 예, 니즈파악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나,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음 |
| ④ | □ | 아니오 |

|  |
| --- |
| \* 지역사회 니즈파악 파악 예시 사업장 인근 지역 불만사항접수창구, 대외협력 관련 요청사항 등의 수집 및 관리, 관할 관청과의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쟁점현황 정보 수집 등  |

지표 13: 지역사회 공헌활동 (정성평가 동시 평가 지표)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13 | 귀사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지역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정책, 제도 또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까? (복수응답 가능) 정책 및 제도, 프로그램명 기재: |
|   | 구분 | 표시 | 내용 |
|   | ① | □ | 지역사회의 고용창출 |
|   | 정책 및 제도, 프로그램명 기재:  |
|   | ② | □ | 지역사회의 보건 및 건강증진 |
|   | 정책 및 제도, 프로그램명 기재: |
|   | ③ | □ | 지역사회의 전통문화 보존 및 육성, 문화예술(메세나 포함) 지원 |
|   | 정정책 및 제도, 프로그램명 기재: |
|   | ④ | □ | 지역사회의 교육촉진 및 지원 |
|   | 정책 및 제도, 프로그램명 기재: |
|   | ⑤ | □ |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집단 지원 |
|   | 정책 및 제도, 프로그램명 기재:  |
|   | ⑥ | □ | 기업의 지역사회 환경보존 및 보호 |
|   | 정책 및 제도, 프로그램명 기재: |
|   | ⑦ | □ | 기타사항 |
|   | 정책 및 제도, 프로그램명 기재: |
|   | ⑧ | □ | 해당사항 없음 |

|  |
| --- |
| \* 지역사회 공헌활동 지역사회 프로젝트, 불우이웃돕기, 복지기관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활동을 포함  예외)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할인제도 시행 등은 제외됨 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영역.3** |  |  환경성과 |

|  |
| --- |
| 본 영역은 귀사의 **환경성과**에 관한 질문입니다. 귀사의 현황과 가장 가까운 문항을 선택하여 주시거나 귀사의 상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. 모든 문항은 설문지 작성일 기준 최근 1년(2013년 10월 1일 ~ 2014년 9월 30일)의 내용을 바탕으로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.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3-1** |  | 환경정책 |

지표 14: 환경정책 제정‧공시여부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14 | 2014년 현재(작성일 기준)를 기점으로 귀사의 환경정책의 제정여부‧공시여부에 대해 기재하여 주십시오.  |
|   | 구분 | 표시 | 내용 |
|   | ① | □ | 환경정책 제정 및 공시 |
|   | 공시수단 기재: |
|   | ② | □ | 환경정책 제정되었으나 부분 공시함 |
|   | ③ | □ | 환경정책 제정되었으나 공시 안함 |
|   | ④ | □ | 환경정책 미제정 |
|   | ⑤ | □ | 해당 없음 |

|  |
| --- |
| * 공시수단 기재: 공시수단 기재 시 관련 내용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면, 링크주소를 기재
* 예시:
* 환경인증제도: 환경경영시스템, 에너지경영시스템(ISO 50001, KS A ISO50001등), ISO14001, EMS, HACCP, 지정폐기물처리제, 환경친화기업(환경부) 등
* 환경마크제도: 환경마크제도는 동일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 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하여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,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여 환경제품을 개발,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
* 탄소성적표시제도: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일상 생활용품, 가정용 전기기기, 서비스 등 모든 제품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발생량으로 환산하여 라벨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. 또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통해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산·소비를 지원하는 제도
* 건물인증제도: 건물의 에너지 성능, 주거환경의 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
* 기타: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주어진 항목 외에 마크 또는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 기입
* 해당 없음: 상기의 환경인증제도 및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인증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, '해당 없음'을 선택
 |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3-2** |  | 환경법 준수 |

지표 15: 환경법령 위반여부

|  |  |
| --- | --- |
| 지표 15 | 귀사는 최근 1년 동안 환경법령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에 의해서 벌금이상의 처벌이 확정된 적이 있습니까? |
|      | 구분 | 표시 | 내용 |
| ① | ○ | 있음 |
| 사후조치사항 |
| ② | ○ | 없음 |

|  |
| --- |
| * 환경법 및 규정 위반 사례
* 벌금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, 분쟁해결제도에 제기된 사례
* 환경법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없는 경우, 그러한 사실 간략히 기술
 |

|  |
| --- |
| **2014 KOTRA 해외진출기업 사회책임경영(CSR) 평가지 (정성평가)** |

|  |
| --- |
| 본 영역은 귀사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정성평가 부문입니다. 정량평가지표 13번에서 제시한 사회공헌 사례를 위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. 작성일 기준 최근 1년(2013년 10월 1일 ~ 2014년 9월 30일)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. |

**□ 작성 방법**

공적서는 공고문 내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

**1.** 허위·가공 없는 정보 및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사회책임경영 정책 및 성과를 작성함

 ○ **최근 1년 이내(2013년 10월 ~ 2014년 9월)의 사회책임경영 성과**를 기준으로 함

 ○ 보고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표, 그림 등 보조 수단 활용이 가능함

**2. 목차에 따라 사회책임경영 활동내용**에 대해 서술함

|  |
| --- |
| 1) 추진배경(20점) o 계획(목적 및 전략, 대상)2) 활동개요(30점) o 활동기간 o 활동지역 o 소요예산(있을 경우 작성) o 시행활동3) 실시효과(50점) o 시행결과 |

**3.** 공적서는 5**매 이내** 작성을 원칙으로 함

 ○ 첨부사항이 있을 경우 첨부 가능함(면수에 미포함)



1. 추진 배경

 □

2. 활동 개요

 □ 활 동 명 :

 □ 활동기간 :

 □ 활동지역 :

 □ 소요예산 :

 □ 시행활동 :

3. 실시 효과

 □

 ○

4. 참고 사진

 (증빙자료 :사진, 영상,보고서,PPT자료 등)



|  |  |
| --- | --- |
| **평가항목** | **작성시 고려사항** |
| **PLAN**타당성:(계획·대상) | - 기업의 사업성격 및 사업영역에 맞추어 사회공헌활동의 수혜대상‧지역‧사업부문을 선정하였는가?-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또는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파악하였는가?- 사회공헌활동도 경영계획에 포함되어 전략적으로 계획되었는가?- 사회공헌을 지속적·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확보하고 있는가?-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위해 지원대상, 지역, 사업부문 등을 기업의 사회 영역과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하였는가? |
| **DO**전략성:과정(활동내용) | - 사회공헌활동이 일관되게 진행되었는가?- 사회공헌활동이 기업활동 발전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가?- 자선적·시혜적 차원의 활동(기부 등) 인가?- 기업과 지역에 모두 이익을 주는 전략적 사회공헌인가? - 교육, 환경운동, 후원행사 등에서 벗어나 공공 서비스 활동, 특정지역 사회문제해결, 공익연계 마케팅 등도 고려하였는가? - 기업 핵심 역량과 적합한 부문에 사회공헌활동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였는가?\*Ex) 사회공헌활동으로 자사의 제품과 기술 활용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고객기반을 확보 |
| **SEE**가치창출성:(결과) | - 기간 내 이루어진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의 발전과 기업의 발전이 동시에 기대되는가?- 현지 지역의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고려하고 있는가?- 외부 전문가의 평가 혹은 자문을 받고 있는가?-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홍보의 다양화, 즉, 기업소개 책자, 대언론자료, 연례보고서 등에 포함시키고 있는가? |

|  |
| --- |
| **평가지표별 증빙제출 리스트** |
| **연번****NO** | **지표명****Evaluation Index** | **증빙여부** | **증빙 내용 설명****Name of Supportive Materials** |
| 1 | CEO의 사회책임경영 의지 |  | **□ 사내‧외 커뮤니케이션 관련자료**°예시: 신년사, 정기적 CEO메시지, 사보, 포럼강연, 공식적인 전사 이메일, 지속경영보고서, 공식 웹사이트, 언론매체 등)을 통한 사내외 지속가능경영 의지에 대한 강조 관련 자료 |
| 2 | 부패 |  | **□ 확인된 부패 사례와 이에 대한 조치내용** °예시: 확인된 부패 사례의 수와 성격, 확인된 부패 사례 중 부패를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은 사례의 수, 확인된 부패 사례 중 부패 관련 위반을 이유로 사업파트너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사례의 수, 보고기간 동안 부패와 관련하여 조직이나 근로자에 대해 발생한 법적 분쟁과 그에 대한 결론 보고 |
| 3 | 사업영위기간 |  | **□ 기업공시자료 중 해당부분** |
| 4 | 경영실적 |  | **□ 기업공시자료 중 해당부분** |
| 5 | 노동관행 |  | **□ 적발시 내용 기재** |
| 6 | 근로조건 |  | **□ 평균 근로시간 기재** |
| 7 | 결사 및 단체교섭 |  | **□ 노동조합 증빙자료** |
| 8 | 안전 |  | **□ 안전교육** °최근 1년간 : (2013년 9월 1일 ~ 2014년 9월 31일)°산업안전교육 관련 주제: 안전일반, 산업안전, 화재예방, 사고방지, 위험물 취급, 컴퓨터 활용 관련, 성희롱 등 °교육시간: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모두 포함 |
| 9 | 인력개발 |  | **□ 인력개발**°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보고°최근 1년간 : (2013년 9월 1일 ~ 2014년 9월 31일)°종업원: 정규직, 회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모두 포함 (단, 파견, 사내도급, 소사장제 등은 제외)°교육시간: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모두 포함 |
| 10 | 공정거래 |  | **□ 경쟁저해행위,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자발적 조치 기준 보고** |
| 11 | 고객보호 |  | **□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**°예시: 제품 내 유해물질 분석제도, 제품 안전성을 위한 물질, 자재안전성 검증 제도, 고객의 안전을 위한 제품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교육 제공 등  |
| 12 | 지역사회 니즈파악 |  | **□ 지역사회 니즈파악 파악 예시**°예시:사업장 인근 지역 불만사항접수창구, 대외협력 관련 요청사항 등의 수집 및 관리, 관할 관청과의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쟁점현황 정보 수집 등  |
| 13 | 지역사회 공헌활동 |  | **□ 정성평가를 위한 활동요약서 함께 제출**°예시: 지역사회 프로젝트, 불우이웃돕기, 복지기관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활동을 포함  |
| 14 | 환경정책제정/공시여부 |  | **□ 공시수단 기재: 공시수단 기재시 관련 내용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가 있다면, 링크주소 기재** °예시: 환경인증제도, 환경마크제도, 탄소성적표시제도, 건물인증제도 등 °해당 없음: 상기의 환경인증제도 및 제품·서비스에 대한 친환경인증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, '해당 없음'을 선택  |
| 15 | 환경법령 위반여부 |  | **□ 벌금액수 및 비금전적 제재조치의 수, 분쟁해결제도 제기사례**°해당없음: 환경법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없는 경우, 그러한 사실 간략히 기술 |

|  |
| --- |
| **\*별첨: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에 관한 질문** |
|   |
| 본 영역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 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. 아래의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표창이 제한되거나 취소됩니다. |
|   |
| **단체표창 취소규정 (공적상‧협조상 적용항목)** |
|   |
|  | \* 아래의 내용 중 귀사, 모기업 및 현지법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. |
|   | 구분 | 표시 | 내용 |
|   | ① | ○ | 표창추천일 기준,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된 경우 |
|   |
|   | ② | ○ |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|
|   |
|  |
|  | ③ | ○ |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(동 기준은 민간단체에만 적용) |
|  |
|  | ④ | ○ |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동 기준은 민간단체에만 적용) |
|  |
| ․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\*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․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(단체) |
| ⑤ | ○ |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, “부적정”, “한정”인 상장회사 |
| ⑥ | ○ |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 (단체포함) \*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, 참여제한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|
| ⑦ | ○ |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|
|  ◎ 아래의 경우에는 표창이 취소됩니다. ㅇ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ㅇ 표창 신청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|